

2021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시흥시결산검사위원

목 차

I . 결산검사의견서	3
II .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5
III. 결산검사결과	6
1. 결산검사 총괄 현황	6
가. 시흥시 재정의 개황	6
나. 예산 세입·세출 결산	7
다. 재무제표 결산	13
라. 기금 결산	14
마. 성과보고서 결산	15
2. 그 외 주요 결산	16
가. 채권 및 채무	16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17
다.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18
IV.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19
1. 총평	20
2. 세입분야	21
3. 세출분야	30
4. 재무제표분야	33

2021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신 : 시흥시장

2021회계연도 시흥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2년 4월 22일 ~ 5월 11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홍 헌 영 (시흥시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조 기 철 (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이 영 화 (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강 윤 석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이 기 동 (세 무 사)

I . 결산검사의견서

시흥시장 귀하

2022년 5월 11일

우리 위원 5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로부터 시흥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년 4월 22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1회계연도 시흥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시흥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시흥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기금,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대 표 위 원 홍 현 영



위 원 조 기 철



위 원 이 영 화



위 원 강 윤 석



위 원 이 기 동



I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 및 결산서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동법 시행령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주안 사항으로는 시흥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계장부, 지출증빙서, 관계 법령, 조례 등 법적 근거의 확인을 통한 다각적인 검사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Ⅲ. 결 산 검 사 결 과

1. 결산검사 총괄 현황

가. 시흥시 재정의 개황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회계	세입	1,070,152,702	1,247,081,271	1,387,418,608	1,774,957,427	1,877,400,944
	세출	802,437,642	924,357,706	1,067,620,385	1,481,079,827	1,500,498,981
	결산상 잉여금	267,715,060	322,723,565	319,798,223	293,877,600	376,901,963
기타 특별회계	세입	108,483,320	106,384,121	86,970,722	60,877,964	63,955,819
	세출	31,819,826	40,197,178	42,245,613	18,662,506	37,004,219
	결산상 잉여금	76,663,494	66,186,943	44,725,109	42,215,458	26,951,600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1,060,275,393	979,493,058	758,620,294	665,457,749	495,639,026
	세출	267,232,993	366,915,609	228,236,861	303,081,559	331,353,264
	결산상 잉여금	793,042,400	612,577,449	530,383,433	362,376,190	164,285,762
합 계	세입(수입)	2,238,911,415	2,332,958,450	2,233,009,624	2,501,293,140	2,436,995,789
	세출(지출)	1,101,490,461	1,331,470,493	1,338,102,859	1,802,823,892	1,868,856,464
	결산상 잉여금	1,137,420,954	1,001,487,957	894,906,765	698,469,248	568,139,325

○ 시흥시의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2,436,996백만원, 총 세출은 1,868,856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568,140백만원임.

-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3,649,896원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9% 높으며, 잉여금은 매년 감소 추세임.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1년	8,371,903,504	376,687,500	7,995,216,004	1,618,036,471	1,614,200,405	3,836,066
2020년	7,380,861,898	405,173,702	6,975,688,196	2,096,221,039	2,121,256,280	(25,035,241)
증감	991,041,606	-28,486,202	1,019,527,808	-478,184,568	-507,055,875	28,871,307

- 2021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019,527백만원(14.6%) 증가하였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8,871백만원(115.3%) 증가함.

나. 예산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잉여금 (C=A- B)
합 계	2,332,025,981	2,436,995,789	1,868,856,464	568,139,325
일반회계	1,778,183,634	1,877,400,944	1,500,498,981	376,901,963
공기업특별회계	493,479,312	495,639,026	331,353,264	164,285,762
기타특별회계	60,363,035	63,955,819	37,004,219	26,951,600

회계별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40,043,644	45,128,684	178,666,910	17,056,171	287,243,916
일반회계	29,288,445	38,063,120	145,046,120	16,715,744	147,788,534
공기업특별회계	10,730,199	5,594,360	31,599,265	189,804	116,172,134
기타특별회계	25,000	1,471,204	2,021,525	150,623	23,283,248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436,99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332,026백만원 보다 104,970백만원이 더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6.7%인 1,868,856백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568,140백만원임
- 이 중 이월금 263,840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7,056백만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287,244백만원임.

(2)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1,778,183,634	1,956,802,797	1,877,400,944	10,806,219	68,595,634
전 년 도	1,711,180,954	1,853,970,053	1,774,957,427	10,196,349	68,816,277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877,401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05.6%로서 99,217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102,44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 : 99,217백만원 초과 수납

-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26,887백만원 초과 수납
지방세 과목 중 주민세 1,992백만원, 재산세 2,411백만원, 자동차세 5,266백만원, 담배소비세 3,961백만원, 지방소비세 471백만원, 지방소득세 10,336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450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3,839백만원 초과 수납
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은 2,168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은 1,671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68,491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불납결손액 사유별 분석 : 10,806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0.6%)

- 지방세 징수결정액 462,551백만원 중 불납결손액 8,197백만원(1.8%)은 사유별로 소멸시효 완성 1,423백만원, 행방불명 584백만원, 무재산 3,879백만원, 평가액 부족 2,307백만원, 기타 4백만원으로 구분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30,501백만원 중 불납결손액 2,609백만원(2%)은 사유별로 배분금액 부족 279백만원, 소멸시효 완성 675백만원, 무재산 1,528백만원, 기타 127백만원으로 구분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불납결손액 해당없음.

○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 68,596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3.5%)

- 지방세 징수결정액 462,551백만원 중 미수납액 38,147백만원(8.2%)은 사유별로 무재산 6,529백만원, 행방불명 1,867백만원, 납세태만 15,632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7,042백만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647백만원, 격리 또는 입원 18백만원, 소송계류 920백만원, 국외이주 44백만원, 자금압박 2,930백만원, 기타 2,518백만원으로 구분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30,501백만원 중 미수납액 30,449백만원 (23.3%)은 사유별로 무재산 49백만원, 행방불명 25백만원, 납세태만 29,224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89백만원, 소송계류 94백만원, 기타 883백만원, 납기미도래 85백만원으로 구분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미수납액 해당없음.

(3)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60,363,035	72,868,393	63,955,819	694,921	8,217,653
전 년 도	58,156,411	67,633,424	60,877,964	443,988	6,311,472

○ 세입결산 개요

- 기타특별회계에서 수납액 63,956백만원은 예산액의 106%로서 3,593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 : 3,593백만원 초과 수납

- 교통사업특별회계 156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2백만원, 자활기금특별회계 80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80백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177백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8백만원, 농어업발전특별회계 48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8백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음.

○ 불납결손액 사유별 분석 : 695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0.95%)

- 교통사업특별회계 불납결손액 695백만원이며 사유는 소멸시효임.
- 교통사업특별회계 외 기타특별회계 불납결손액 해당없음.

○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 8,218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11.3%)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30,298백만원 중 8,130백만원(26.8%)이 납세태만 및 기타 사유로 미수납
- 농어업발전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132백만원 중 88백만원(7.8%)이 납세태만을 사유로 미수납
-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외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해당없음.

(4)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이용·전용	수입대체경비
당해연도	1,601,914,272	176,269,362	0	0	0	0
전 년 도	1,505,558,671	205,622,283	0	0	0	0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반납금	불 용 액
1,778,183,634	1,500,498,981	214,246,685	16,715,443	46,722,525
1,711,180,954	1,481,079,827	176,269,362	16,931,008	36,900,757

○ 세출결산 개요

- 일반회계 예산현액 1,778,184백만원 중 1,500,49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214,247백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6,715백만원, 불용액 46,723백만원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 보조금정산잔액 : 13,384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799백만원
 - 낙찰차액 : 154백만원
 - 지출잔액 : 27,584백만원
 - 예비비 : 3,802백만원
-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의 12%인 이월액 214,247백만원은 명시이월액 29,289백만원, 사고이월액 38,063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46,895백만원임.

(5)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변경	이용·전용	수입대체경비
당해연도	52,962,022	7,401,013	0	0	0	0
전 년 도	51,026,390	7,130,021	0	0	0	0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반납금	불 용 액
60,363,035	37,004,219	3,517,729	150,623	19,690,464
58,156,411	18,662,506	7,401,013	51,227	32,041,665

○ 세출결산 개요

-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60,363백만원 중 37,00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3,518백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51백만원, 불용액 19,690백만원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 보조금정산잔액 : 211백만원
 - 지출잔액 : 2,181백만원
 - 예비비 : 17,298백만원
-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의 5.8%인 이월액 3,518백만원은 명시이월액 25백만원, 사고이월액 1,471백만원, 계속비이월액 2,022백만원임.

다. 재무제표 결산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1	2020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8,371,903,504	7,380,861,899	991,041,605	13.43%
Ⅰ. 유동자산	920,423,630	1,086,999,785	- 166,576,155	- 15.32%
Ⅱ. 투자자산	171,738,230	175,043,771	- 3,305,541	- 1.89%
Ⅲ. 일반유형자산	568,342,917	521,358,192	46,984,725	9.01%
Ⅳ. 주민편의시설	2,252,427,121	1,917,561,262	334,865,859	17.46%
Ⅴ. 사회기반시설	4,426,014,259	3,650,217,723	775,796,536	21.25%
Ⅵ. 기타비유동자산	32,957,347	29,681,166	3,276,181	11.04%
부 채	376,687,500	405,173,703	- 28,486,203	- 7.03%
Ⅰ. 유동부채	325,834,856	353,258,209	- 27,423,353	- 7.76%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50,852,644	51,915,494	- 1,062,850	- 2.05%
순자산	7,995,216,004	6,975,688,196	1,019,527,808	14.62%
Ⅰ. 고정순자산	7,083,471,992	5,919,990,475	1,163,481,517	19.65%
Ⅱ. 특정순자산	21,276,294	22,743,493	- 1,467,199	- 6.45%
Ⅲ. 일반순자산	890,467,718	1,032,954,228	- 142,486,510	- 13.79%

○ 시흥시의 자산은 8,371,90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91,042백만원 (13.43%) 증가

- 유동자산은 재정자금(유동:117,609백만원 감소)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분양용지(38,051백만원 감소)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66,576백만원 감소
- 투자자산은 재정자금(비유동)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306백만원 감소
- 일반유형자산은 행정용 토지 및 건물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6,985백만원 증가

- 주민편의시설은 공원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34,866백만원 증가
- 사회기반시설은 도로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75,797백만원 증가

○ 시흥시의 부채는 376,68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486백만원(7.03%) 감소

- 유동부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분양선수금 감소(50,614백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27,423백만원 감소
- 기타비유동부채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임대형민자사업(BTL)과 관련한 리스 부채의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1,063백만원 감소

라. 기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잔 액	당 기 수 납	당 기 지 출	기 말 잔 액
합 계	154,361,977	150,035,905	8,115,038	296,282,8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143,252,641	69,526	143,183,115
재 난 관 리 기 금	8,439,548	3,427,900	6,863,494	5,003,95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400,480	1,538,827	433,777	5,505,530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2,493,974	543,167	606,547	2,430,594
식 품 진 흥 기 금	892,365	143,054	141,694	893,725
상수도사업회전기금	46,319,382	371,753	0	46,691,135
공 영 개 발 회 전 기 금	91,816,228	758,563	0	92,574,791

○ 2021회계연도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의 202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96,28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1,921백만원 증가하였음.

마. 성과보고서 결산

- 시흥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1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시흥시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별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서별 총 12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3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2021회계연도에는 성과지표 335개 중 292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초과달성 56개, 달성 236개), 43개 사업이 목표치에 미달하여 87%의 성과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수 (실국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B/A)
18	120	335	292	43	87%

※ 초과달성 : 130%, 달성 : 100% ~ 130%, 미달성 : 100% 미만

2. 그 외 주요 결산

가. 채권 및 채무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6,136,739	96,650	589,897	5,643,492
일 반 회 계		5,229,325	17,611	261,992	4,984,945
특 별 회 계		907,414	79,039	327,905	658,547
	공기업특별회계	968	0	0	968
	기 타 특 별 회 계	906,446	79,039	327,905	657,579

○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43백만원임.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0	0	0	0	0

○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임.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3,923,699,674	1,618,555,431	115,402,623	5,426,852,482
행정 재산	계	3,851,625,117	1,250,406,103	113,018,343	4,989,012,877
	공 용 재 산	805,693,584	92,558,772	10,428,723	887,823,633
	공 공 용 재 산	2,894,951,857	1,157,571,184	102,586,298	3,949,936,743
	기 업 용 재 산	106,225,419	0	3,323	106,222,096
	보 존 용 재 산	44,754,258	276,147	0	45,030,405
일 반 재 산		72,074,557	368,149,328	2,384,280	437,839,605

○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26,852백만원임.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2,136	690	162	2,664
금 액	20,735,720	2,968,108	3,082,512	20,621,315

○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621백만원임.

다. 세입 · 세출외 현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합 계	4,133,870	37,182,214	37,241,053	4,075,031
보증금	175,431	33,338	46,393	162,376
보관금	3,886,421	36,661,826	36,855,764	3,692,483
기 타	72,018	487,050	338,896	220,172

○ 보관내역

- 보증금 :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등 162백만원
- 보관금 :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 3,693백만원
- 잡종금 : 팩스민원수수료, 가로수원상회복예치금 등 220백만원

Ⅳ. 시정 및 개선 권고안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 총 평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2021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입분야, 세출분야, 재무제표 분야로 나누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금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 및 불납결손액과 체납처분의 철저한 관리로 재정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올바른 결산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 예산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무제표 분야에서는 객관적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계정과목을 적용하여 재정상태표를 작성하고, 철저한 회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불황 등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2021회계연도의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시흥시의회 의장님과 과중한 업무에게도 불구하고 결산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세입분야

□ 징수율 관리 필요

○ 현황

- 2019년부터 2021년 3개년 동안 통제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정리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회계 연도	가. 징수결정액	나. 정리액			다. 정리율		
				(1) (실제)수납액	(2) 불납결손액	(3) 계 (1)+(2)	(1) 징수율 가/나	(2) 결손율 가/나	(3) 계 (1)+(2)
A. 지방세수입		2021	462,551,031	416,207,703	8,196,629	424,404,332	89.98	1.77	91.75
		2020	430,836,663	380,001,652	7,051,388	387,053,040	88.20	1.64	89.84
		2019	413,207,734	364,140,240	1,720,275	365,860,515	88.13	0.42	88.54
B. 세 외 수 입	(a) 경상적 세외수입	2021	147,571,910	146,534,034	-	146,534,034	99.30	0.00	99.30
		2020	155,068,595	153,963,413	-	153,963,413	99.29	0.00	99.29
		2019	171,222,188	169,880,480	31	169,880,511	99.22	0.00	99.22
	(b) 임시적 세외수입	2021 ¹⁾	275,153,536	86,062,415	3,304,511	89,366,926	31.28	1.20	32.48
		2020	167,409,650	119,458,157	3,737,044	123,195,201	71.36	2.23	73.59
		2019	108,384,593	61,913,061	4,017,346	65,930,407	57.12	3.71	60.83
C. 합계		2021	885,276,477	648,804,152	11,501,140	660,305,292	73.29	1.30	74.59
		2020	753,314,908	653,423,222	10,788,432	664,211,654	86.74	1.43	88.17
		2019	692,814,515	595,933,781	5,737,652	601,671,433	86.02	0.83	86.84

-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3년간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장기체납자²⁾를 대상으로 한 이월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현황(이하 ‘조치율’ 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결산서 상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을 합한 금액임.

2) 체납이후 1년 경과자를 기준으로 함.

(단위 : 천원)

귀속	구분	가. 이월체납액	나. 조치사항별 금액							다. 조치율 나(7)/가
			(1)압류	(2)공매	(3)출국 금지	(4)신용 정보 등록	(5)번호 판영치	(6)가택 수색	(7)계	
2019	지방세	52,957,919	10,586,735	1,833,237			1,240,076	450,394	14,110,444	26.64%
	세외 수입	34,076,709	1,364,096	47,592			183,922		1,595,610	4.68%
2020	지방세	37,121,005	26,784,201	603,714		3,741,962	432,671	428,205	31,990,755	86.18%
	세외 수입	27,915,495	3,630,109	203,195			562,213		4,395,518	15.75%
2021	지방세	52,805,094	61,744,944	1,158,938	359,778	12,734,284	513,832	483,665	76,995,444	145.81%
	세외 수입	25,032,653	3,545,638	635,644			414,996		4,596,279	18.36%

-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고액체납자(1천만원 이상 체납자)현황, 금액 및 징수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명, 천원, %)

회계연도	구분	체납인원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2019년	지방세	451	16,220,489	2,535,917	15.63
	세외(일반회계)	5	183,072	48,229	26.34
	합계	456	16,403,561	2,584,147	15.75
2020년	지방세	484	18,460,971	2,106,290	11.41
	세외(일반회계)	23	1,194,742	202,618	16.96
	합계	507	19,655,713	2,308,909	11.75
2021년	지방세	465	15,605,051	3,509,688	22.49
	세외(일반회계)	95	8,463,172	191,255	2.26
	합계	560	24,068,223	3,700,944	15.38

-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외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징수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징수과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담당하여야 하는 부서에서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는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과목 중 이행강제금 내역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농업정책과			건축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2021	3,240,596	23,195	0.72*	5,558,960	759,499	13.66
2020	292,536	99,502	34.01	1,349,675	294,865	21.85
2019	286,393	20,708	7.23	857,069	403,433	47.07

* 2021년 농업정책과의 징수율이 유난히 낮은 이유는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일부 납부의무자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기 때문임.

○ 문제점

-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징수율(세수입 및 세외수입 기준)과 정리율을 보면,
(단위 : %)

구 분			2019	2020	2021
가.징수율	지방세수입		88.13	88.2	89.98
	세외수입	경상적	99.22	99.29	99.30
		임시적	57.12	71.36	31.28
나.결손율	지방세수입		0.42	1.64	1.77
	세외수입	경상적	0	0	0
		임시적	3.71	2.23	1.2
다.정리율 (가+나)	지방세수입		88.54	89.84	91.75
	세외수입	경상적	99.22	99.29	99.30
		임시적	60.83	73.59	32.48

- 지방세수입의 징수율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연도에 비해 징수율 및 정리율이 저조합니다.
- 또한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율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지방세수입] ('19) 26.64% → ('20) 86.18% → ('21) 145.81%
[세 외 수입] ('19) 4.68% → ('20) 15.75% → ('21) 18.36%

-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모두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비율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 대한 조치율이 지방세수입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고액)지방세징수율] ('19) 15.63% → ('20) 11.41% → ('21) 22.49%
 [(고액)세외(일반)징수율] ('19) 26.34% → ('20) 16.96% → ('21) 2.26%
- 지방세의 고액체납자 징수율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세외(일반)징수율은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 다만, 임시적세외수입(제재금·부과금 포함)의 부과를 담당하는 부서의 초기 징수율은 농업정책과 0.72%, 건축과 13.66% 등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부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징수율 저조는 고스란히 징수과로 넘어가 징수과 업무 과중으로 이어집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질문권, 검색권, 수색권 및 압류절차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권한을 토대로 조치율 높여야 합니다.
- 다만, 인력의 부족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면 세외수입 중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불어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는 부과만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징수과로 이전된다고 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징수과와 함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불납결손의 관리 필요

○ 현황

-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의 사유별 결손액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불납결손액	사유별							
		배분 부족액	채납 처분지 중지	시효 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	평가 부족액	기타
2021	10,806,219	279,532	0	2,097,782	583,424	5,406,854	388	2,306,909	131,327
2020	10,196,349		2,375	1,686,951	172,708	7,965,519	1,066	367,616	110
2019	4,915,651		9,151	1,649,879		3,256,621			
2018	3,810,411			352,792	6,492	2,700,645			16,272
2017	3,469,354	5,536	2,100	1,323,575	422	2,120,316		127	17,278

- 결손처분대상자 중 행방불명과 평가부족으로 판단하는 절차는
 - 행방불명의 경우 채납징수단이 전산 상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해당 주소의 우편물의 상황, 전산 상의 주소지에 실제 주거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행방불명으로 분류하고,
 - 평가부족의 경우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한 근저당, 개인채무, 국세 등을 고려할 때 채납된 지방세 등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무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 2017~2019년까지 30~40억원 수준이던 불납결손액이 2020년 101억, 2021년 108억원으로 계속하여 100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 불납결손액의 사유 중 행방불명과 평가부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행방불명] ('19) 0백만 → ('20) 172백만 → ('21) 583백만

[평가부족] ('19) 0백만 → ('20) 367백만 → ('21) 2,306백만

- 2020년 대비 2021년 불납결손의 특이사항은 위와 같이 행방불명의 사유와 평가부족액의 사유를 적극 활용하여 불납결손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결손처분 사유 중 무재산으로 판단하기 앞서 법률적 행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리율의 제고 및 이월체납액 축소를 통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불납결손처분하는 것은 일부 타당할 수 있으나, 2020년부터 계속하여 2020년 101억, 2021년 108억 상당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기 전에 고액체납자들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법적 검토를 진행한다면 결손율은 줄이고 징수율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제41~ 제48조)
 - ② 통정행위 여부 확인(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4항)
 - ③ 사해행위 여부 검토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착오로 인한 오류 수정

○ 현황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101백만원을 2021년 12월 26일 (납부기한: 2022년 1월 21일까지)부과하였고, 이에 납입자는 2022년 1월 20일 13시에 해당 부과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 2022년 1월 20일 사업담당자는 상기 입금액을 공문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입금된 것으로 정의하여 2021회계연도 공금계좌에 이체를 요청하였고, 2022년 1월 24일 15시 이체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결산담당자는 세입결산 시 1,101백만원의 미수금을 2021회계연도 수납분으로 처리하여 세입결산에 반영하여 마감하였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도 상기 금액을 예금에 포함하였으며, 농협은행 시흥시청출장소에서 발급한 2021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에도 1,101백만원이 총수입에 포함되어 발급되었습니다.

○ 문제점

- 특별회계 결산담당자의 소명에 따르면 부과담당자가 출납폐쇄기한 예외사항 수입/지출처리 마감일인 2022년 1월 20일에 1,101백만원이 가상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유로 하여 긴급히 2021회계연도 공금예금통장에 이체해야 한다는 공문을 세입담당자에게 보냈고, 세입담당자와 결산담당자는 해당 공문을 받은 일자가 공금예금통장 마감일인 2022년 1월 20일인 관계로 긴급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상계좌 입금일(2022년 1월 20일)을 확인하지 못하여 해당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2021년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을, 미수금이 아닌 수납액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적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 결산 과정에서의 증빙확인 소홀

- 수입담당자가 2022년 1월 20일 부과담당자에게서 받은 공문은 긴급이체요청이었으나, 해당 공문은 폐쇄기한이 지난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계좌의 일자가 확인되는 고지/수납내역서 상에도 수납일이 2022년 1월 20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결산검사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부과/세입/결산 담당자 모두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2) 시금고(농협)의 임의 수정된 증명서 발급

- 시금고(농협)가 발행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은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금액과 비교 대조하는 과정에서 결산담당자가 오류 및 부정을 검증하게 하는 중요 서류이며, 또한 결산서의 주요 부속서류입니다. 이러한 중요 서류는 발급자의 신뢰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은행전산에서 표시되는 숫자와 동일하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흥시 금고는 2021년 결산과 관련하여 2022년 1월 20일 기준으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2022년 1월 24일 이체된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 시 예외사항에 대한 증빙 수집 미흡

- 지방공기업법 제 35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는 결산서에 외부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를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결산보고가 되기 위함입니다. 상기 오류금액은 2022년 1월 24일 금고예금통장에 이체된 거래이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 증빙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수금을 과소계상하고 세입수납과 예금을 과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권고 및 개선사항

- 결산검사에 제출된 특별회계 및 통합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액과 순세계 잉여금 등은 1,101백만원 과대, 미납액은 1,101백만원이 과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재무상태표와 통합재정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101백만원이 과대, 미수금은 1,101백만원이 과소 표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회계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와 통합세입세출결산서 및 통합재정 상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마지막으로 각 업무의 담당자는 똑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기간에 이루어진 거래들에 대하여 증빙확인, 상호검증 등 보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3. 세출분야

□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 현황 -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2억원 이상)

- 2021연도 중 ‘2억원 이상’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23개 부서 33건의 사업에 대하여 불용액 총액이 210억원이며, 예산 불용률이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100.0%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아래의 표는 그 중 일부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3,141	2,394	-	747	코로나로 인한 경제상황 위축으로 담보 등 어려움에 따른 대출 감소
대중 교통과	운수업계 보조금	25,000	23,322	-	1,678	유가보조금 신청분에 대한 미지급 발생시 반발이 예상 되어 감액 곤란 및 하반기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지급 단가 감소
문화 예술과	시흥형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700	160	78	462	타 시흥형 안정자금 중복 수혜자 제외 사업으로 신청자 및 수혜자가 예상 보다 적음 [∴ 타 지원금(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수령자 다수 판단] 참고로, 예산(7억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 된 시흥시 예술인 688명 × 1백만원/명’ 으로 책정됨

- 한편, 위 사업 중 계속 사업에 대한 2021년 포함 과거 3년간 예산현액과 지출액 등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021	3,141	2,394	-	747
		2020	2,956	2,438	-	517
		2019	3,002	2,482	-	520
		평균		2,438		
대중 교통과	운수업계 보조금	2021	25,000	23,322	-	1,678
		2020	22,186	22,019	-	166
		2019	25,836	22,777	3,058	-
		평균		22,706		

○ 문제점

-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한 예산 운영이 일부 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과 ‘운수업계보조금’사업의 경우, 과거 지출액을 보면 유사한 범위에서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예산 불용액이 각각 747백만원과 1,678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최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과거 지출액 등에 대한 검토(각각 2019~2021 지출액의 평균은 2,438백만원과 22,706백만원임)를 통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2021년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시흥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출발점인 ‘시흥시 거주 예술인의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부터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 등 예술인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받지 못한 채 688명이라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와 그로

인하여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타 시흥형 안정자금’과의 중복수혜자가 예상보다 많아짐에 따라 불용률이 66%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하여 현재의 추경 횟수 또는 추경 시기조정 등 추경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보다 더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재무제표 분야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미비 및 회계처리 미흡 등

○ 현황

- ‘시흥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는 1989년 8월 10일 제정된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에 근거하고 있으며, ‘택지조성사업, 공유수면 매립 및 도로개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각각 6,925억원과 2,785억원, 자산총계 중 현금및현금성자산 278억원과 정기예금(단기금융상품) 700억원 및 일반회계 대여액 2,200억원³⁾이 있습니다.
- 아울러, 특별회계는 현재 배곧지구 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 등 배곧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준공 및 향후 도로사업 마무리만 필요한 상황이며, 해당 혁신성장사업단은 조직의 운영기한이 2023년 2월 21일로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한편, 2019년 10월 향후 시흥시의 도시개발을 위하여 시흥도시공사가 출범되었습니다.
-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월곶동 995번지’ 부지매매계약이 특별회계(매도인)와 일반회계(매수인)간 체결되었고, 매매대금은 8,968백만원(용지매출수익 8,968,000,000원, 용지매출원가 815,808,216원)⁴⁾으로서 특별회계는 2019년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하였으며, 채무자인 일반회계가 채권자인 특별회계에게 2018년 12월 31일, 2019년 5월 20일, 2020년 6월 15일 3차례에 걸쳐 각 896,800,000원씩 총 2,690,400,000원을 지급한 뒤 2021년에는 ‘경기도 자산관리과- 4473(2021.3.23.)’에 의거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단기: 275억원, 장기: 1,025억원)과 회전기금 출자금(900억원)

4) 출처: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지방공기업) 37쪽 총 용지매출수익 8,968,000,000원 용지매출원가 815,808,216원

- 참고로, '월곶동 995번지'부지매매계약 관련 특별회계(매도인)와 일반회계(매수인)간 매매대금 정산과 회계처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내용에 대한 회신문(경기도 자산관리과- 4473(2021.3.23.))을 보면,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유상이라도 자금이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2) 회계처리는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으로 취득자산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순자산 재무계정과목은 3403- 01 회계간의 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3503- 01 회계간의 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 생긴 자산감소 입니다.

○ 문제점

- 배곧지구 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및 도로 사업 등을 위하여 운영기한이 2023년 2월 21로 한시적인 조직에 기반한 '시흥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바, '시흥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근거 법령인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등' 시흥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시흥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유사한 기능의 시흥도시공사와 별도로 운영 하는 것에 대한 시 차원의 공식적인 적정성 검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한편, 2018년 12월 31일, '월곶동 995번지'부지매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특별회계(매도인)는 2019년도 재무제표에서 동 부지의 원가를 제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미수금(장기미수금 포함) 6,277,600,000원을 계상하고 있고, 일반회계(매수인)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건설중인일반유형

자산으로 2,690,400,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관련 회계처리를 매매계약 체결연도인 2018년도 아니고 매매계약서 제5조제1항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도 아닌 2019년에 한 것도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향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시흥도시공사의 설립목적과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 준수를 위한 존속기한을 명시한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특별회계의 존속 및 특별회계 운영주체의 운영기한(2023년 2월 21일)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특별회계의 지속운영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권고합니다.
- 이 때(즉, 검토 시), ‘일반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2항5)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는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0조(출자)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출자금으로 100% 운영된 특별회계의 보유현금[현금및현금성자산 278억원, 정기예금(단기금융상품) 700억원]과 일반회계 대여액 2,200억원 및 ‘월곶동 995번지’ 부지매매대금 미수액 등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채권/채무의 정리 등 일반회계에서의 활용성도 고려요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2018년 12월 31일 ‘월곶동 995번지’ 부지매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5)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관련, 2021년 12월 31일 현재 특별회계(매도인)는 미수금(장기미수금 포함) 6,277,600,000원을 계상하고 있고, 일반회계(매수인)는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으로 2,690,400,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월곶동 995번지’ 부지매매계약 관련 특별회계(매도인)와 일반회계(매수인)간 매매대금 정산과 회계처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경기도 자산관리과- 4473(2021.3.23.))에 따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거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유상이라도 자금 이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3403- 01 회계간의 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3503- 01 회계간의 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 생긴 자산 감소’ 재무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회계 간 재산 이관을 하고, 그 결과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 훈령 제274호) 제45조제1항 2호에 의거 직전 회계실체(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장부가액(815,808,216원)으로 취득자산을 평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 객관적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계정과목 적용

○ 현황

- 시흥시가 통합재정상태표에 계상한 단기대여금 및 단기차입금 4,044억원은 회계간에 체결한 내부거래 자금약정으로서 아래표와 같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분할하여 상환 및 회수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연도별 자금회수 및 상환금액

(단위: 억원)

예탁(대여)처	예수(차입)처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공영개발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5	285	285	455	1,30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11	-	70	81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51	-	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250	300	350	500	1,400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	일반회계	225	225	225	225	900
상수도회전기금	일반회계	78	78	78	78	312
합 계		828	899	989	1,328	4,044

○ 문제점

- 재정상태표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로 시흥시의 재정상태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통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재무제표 작성 방안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통합재정 상태표에 계상된 4,044억의 단기대여금은 828억원의 단기대여금과 3,216억원의 장기대여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4,044억의 단기차입금은 828억원의 유동성장기부채와 3,216억원의 장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해당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내역을 주석으로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시흥시의 회계간 예탁(대여) 및 예수(차입)의 자금거래는 각 회계간 기금간의 내부거래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와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상태표는 재무회계작성치침에 따라 약정내용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기를 권고합니다.

□ 미수임대료 및 연체료 금액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 현황

- 2016년(2015년 이전 재무제표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함)부터 2021년 “월곶지구(임대료)”에 대한 채권금액은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 | |
|---------|---------------------------|
| · 영업미수금 | 3,634,212천원 ⁶⁾ |
| (대손충당금) | (3,634,212천원) |
| · 기타미수금 | 2,463,517천원 ⁷⁾ |
| (대손충당금) | (2,463,517천원) |

- 채무자인 주식회사 마린월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2017년 감사보고서(2018년 이후부터는 감사보고서 없음) 주석 내용 중 시흥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시흥시에 대한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계정과목	당기	전기
미지급금	4,512,510,782	4,512,510,782
미지급비용	5,790,434,680	5,106,637,913
합 계	10,521,650,851	9,619,148,695

- 주식회사 마린월드 주석 사항 일부 발췌 -

○ 문제점

-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제99조(채권의 관리) 제1항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및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등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는 1999.8.12. ~ 2009.8.11.(10년)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령하여야 할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소송⁸⁾을 통해 원금은 4,512,510천원⁹⁾을

6) 영업미수금 중 1999.8.12. ~ 2009.8.11.(10년) 주식회사 마린월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곶동 995번지를 임대하였으나, 약 2년간 7.4억원만 납입하고 그 후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누적된 미수임대료만을 표시함.

7) 기타미수금 중 주식회사 마린월드의 미수임대료에 대한 연체이자만을 표시함.

확정한 바 있습니다.

- 소송의 결과로 원금에 가산되는 연체이자 원금 4,512,510천원 중 4,317,198천원은 일정기간(2010.5.14.~ 2011.8.18.)까지는 5%와 이후부터는 20%의 연체이자를, 195,312천원은 일정기간(2011.3.1.~ 2012.5.23.)까지는 5%와 이 후부터는 20%의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시흥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더 이상의 연체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결산서 상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6,097,729천원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그 전 것은 확인 안 됨) 계상하고 있습니다.
- 반면, 채무자 주식회사 마린월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최종 (2017) 감사보고서 주식 상 시흥시에 대한 채무를 10,521,650천원으로 이미 계상하고 있어 시흥시는 해당 채권에 대한 기업간의 회계 불부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해당 미수채권(영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에 대한 내용을 주식회사 마린월드 감사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결산에 반영하고 해당 미수채권에 대한 인수인계 및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해당 채권은 시흥시에서 가장 큰 미수채권이므로, 매 결산일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상 주식회사 마린월드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른 채권액(임대료와 연체료)과 재무제표상 채권액에 대하여 주식 등을 통해 부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1심(2010가합3725, 일부원고승)을 거쳐 2심(2011나76978, 일부원고승) 이후 채무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2012. 5. 23. 최종확정됨.

9) 소송 당시 원금 3,318,337천원 및 연체이자 1,995,284천원에서 기납입액 740,852천원을 차감한 4,573,099천원을 신청하였으나, 소송 중 4,512,510천원으로 감액됨.